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
----------	-----

발의연월일 : 2004 . 7. 15

발 의 자 : 신기남 · 구논회 · 권철현
김낙순 · 김덕규 · 김맹곤
김영주 · 김우남 · 김원웅
김재홍 · 김충환 · 김태홍
김한길 · 김현미 · 김형주
노웅래 · 노현송 · 노회찬
단병호 · 류근찬 · 문학진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박병석 · 박상돈 · 박진
박찬석 · 박찬숙 · 복기왕
손봉숙 · 송영길 · 신국환
심재철 · 안명옥 · 엄호성
오영식 · 이상호 · 우윤근
우제항 · 유기준 · 유기홍
유선호 · 유승희 · 유재건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민
이영순 · 이종걸 · 임종석
임종인 · 임채정 · 장복심
장향숙 · 전병헌 · 정덕구
정병국 · 정성호 · 정청래
조배숙 · 천영세 · 천정배
최용규 · 최재천 · 최인기
홍미영 의원 (67인)

제 안 이 유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한글」은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정보화에 가장 편리한 한글의 중요성을 드높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한글은 현존하는 수천의 문자 가운데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을 기리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

주요 골 자

현재 기념일로 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킴(안 제2조).

법률 제 호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慶日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 國慶日是 左와 같다.</p> <p><u>3·1節 3月 1日</u></p> <p><u>制憲節 7月17日</u></p> <p><u>光復節 8月15日</u></p> <p><u>開天節 10月 3日</u></p>	<p>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3·1절 3월 1일</u></p> <p>2. <u>제헌절 7월 17일</u></p> <p>3. <u>광복절 8월 15일</u></p> <p>4. <u>개천절 10월 3일</u></p> <p>5. <u>한글날 10월 9일</u></p>